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3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정을호·이연희·추미애

정태호 • 한준호 • 전현희

진성준 · 김동아 · 강유정

강경숙 · 김준혁 · 맹성규

백승아 의원(13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,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,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

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 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 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.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,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 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.

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(취업제한 명 령을 선고받은 자)에 대한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 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
- 2.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제공한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65조(벌칙) ① · ② (생 략)

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이 병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이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.

제65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이 변경이 이해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」 또는 「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경우
- 2.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

	노무를 제공한 경우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